# □ 거창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전부개정조례안 -□ 심 사 보 고 서 -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08. 10. 02.

나. 제출자: 거창군수
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08. 10. 16(제2차 산업건설위원회)

라. 의안번호: 제2008 - 42호

# 2. 제안설명 요지

#### 가. 개정이유

○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의 시행 등 각종 사업예산 투입이 증가함에 따라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육성범위와 지원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 우리 군 친환경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내용

-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-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· 시행에 관한 사항
-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의 범위, 지원대상, 절차, 대상자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
- 농업환경개선 시책 및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한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

- O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
  - 위원회의 기능과 구성, 위원임기, 위원장 직무, 위원해촉, 회의, 간사 및 회의록, 심의사항 처리, 의견청취 및 공청회 개최, 수당에 관한 사항
- O 광역친환경농업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사업단의 구성과 기능, 광역단지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범위 및 사업단 운영에 관한 사항
- O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가. 그동안 우리나라의 농업정책이 증산위주로 추진해 온결과 농업환경이 극도로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 생산을위협하고 있으며, 국제적으로도 농산물에 대한 안전기준이 강화되는 등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어친환경적인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여 소비자의 욕구에 부응하고,
  - 친환경 농업을 권장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에서 친환경 농업은 필수적인 사안인 만큼, 2008년 농림사업시행지침(농림부)에 의거 광역친환경농업지구조성의 시행 등 친환경농업과 관련한 전체적인 육성범위와 지원규정 등을 명확히 하여친환경 농업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전부개정하려는 것임.

#### 나. 주요 내용으로는

- 안 제2장에서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사항으로,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수립, 지원사업의 범위, 지원대상, 절차 등을 명확히 하였으며
- 안 제3장에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 설치·운영에있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공청회 개최 조 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여지고, 또한
- 안 제4장에서 광역친환 경농업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지원사업, 사업단장의 직무사업단 운영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신설하였으며,
- 안 제5장에서 인증농산물의 판매촉진과 홍보강화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과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의 평가 및 시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, 개정안 내용이 친환경농업육성법과 2008년도 농림사업시행지침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,
- 그 밖에 상위법 저촉사항이나 행정절차법 이행 등 관계 법령을 살펴 본 결과 별다른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됨.
- 4. 질의 및 답변요지: 해당없음
- 5. 토론요지: 해당없음
- 6. 수정안 요지 : 해당없음

- 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의견의 요지 : 해당없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: 해당없음